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통·리장이 수행하던 임무 중 지역의료보험에 관련된 사항을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동 임무를 삭제하고,
-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통·리장에게 복종의 의무를 강제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통·리장의 임무수행 내용 중 “파주시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가격확인업무, 보험료 부과·징수업무 등 지원협조, 기타 의료보험 운영을 위해 지원할 사항”을 삭제(안 제2조제2항제5호)
- 통·리장의 직무상 명령의 복종에 관한 조항을 삭제(안 제3조제2항)

□ 검토의견

- 동 조례개정안건은 읍·면·동의 통·리를 대표하며 통·리구역안에서 읍·면·동장의 임무 중 그 일부를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통·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 조례중 일부내용이 현행 지방자치시대와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 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조례 제2조(통·리장의 임무)중 제2항 5호에 규정된 “파주시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자격확인업무, 보험료부과·징수업무 등의 지원협조, 기타 의료보험운영을 위해 지원할 사항”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둘째, 조례 제3조(복무)중 제2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라는 내용이 복종의 의무를 강제하는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삭제 정비하려는 것임.

- 동 개정안중 조례 제3조(복무)중 삭제하려는 “통·리장의 직무상 명령복종”에 관해서는 감사원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규제 추진실태를 감사하던 중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되어 행정자치부에 폐지를 권고한 사항이고, 의료보험지원사항도 이미 사무가 소관기관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개정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반상에관한조례[1996.3.1 조례 제57회]

제2조(통·리장의 임무) ①통·리장은 통·리 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통·리장은 통·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5. 파주시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자격확인업무, 보험료 부과·징수업무 등 지원협조, 기타 의료보험운영을 위해 지원할 사항

제3조(복무) ②통·리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